

서울교통공사(궤도분야) ·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상생발전 간담회

일시 : 2024. 09. 06.(금) 15:30

장소 :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제2회의실



간담회 진행 순서

- 1 참석자 소개 및 간담회 추진 목적
- 2 2024년 서울교통공사 궤도분야 주요 사업계획
-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4 궤도공사 사고사례 및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 5 성과사항 및 주요의제, 협력사 건의(애로)사항
- 6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7 마무리 인사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2024년 궤도분야 주요 사업현황

공사명	발주 건수	사업비 (백만원)	발주(예정)시기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4건	5,241	6월 계약
궤도도상 개량공사	3건	15,422	4월 계약 9월 발주
노후레일 교환공사	2건	2,700	9월 발주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1건	2,000	9월 발주
고가부 자갈도상 교체공사	1건	1,441	9월 발주
교량 궤도시설물 개량공사	2건	12,000	6월 계약
레일밀링공사	1건	1,480	9월 계약
노후방진재 개량공사	1건	2,145	4월 계약
계	15건	42,4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란?[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p>처벌 대상 및 내용</p> 	<p>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p>법인이나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p>손해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p>시행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궤도공사 사고사례

장비 취급 부주의 안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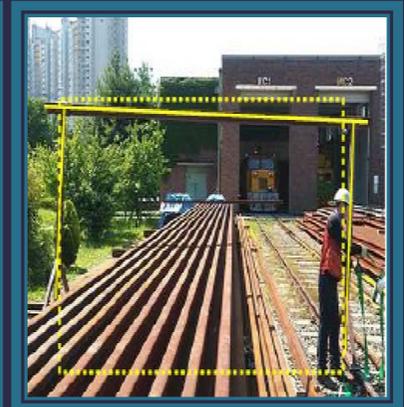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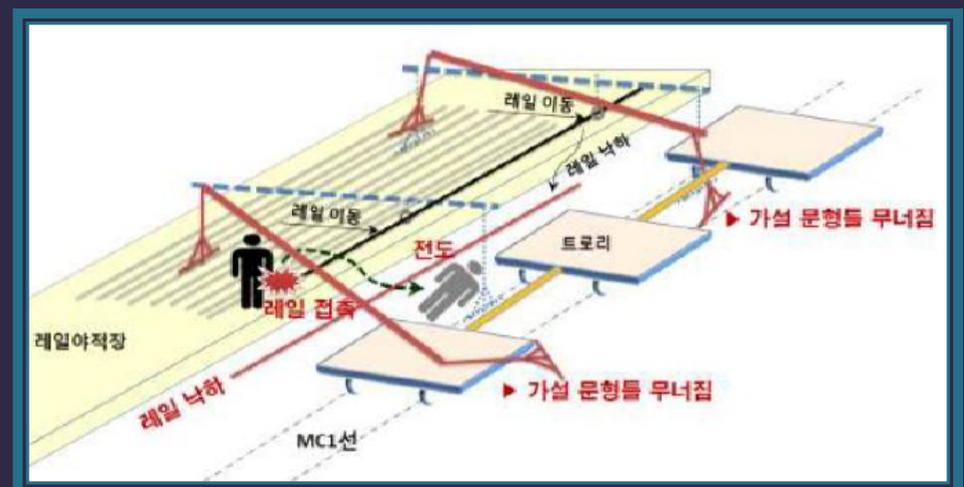
☀️ 사고개요

- 일 시 : 2018.6.16. (토) 10:35분경
- 장 소 : 7호선 천왕차량기지(레일 야적장)
- 내 용 : 가설 문형틀 균형이 무너져 작업원이 낙하 레일과 접촉

☀️ 발생원인

- 가설 문형틀 조립 시 **핀 쇠정 너트 미 체결**
- 가설 문형틀 좌·우측 기둥 간 **높이 차 발생**
- 가설 문형틀 기둥 도상 침목 위 단순 거치로 **균형 유지 불량**

☀️ 피해현황 : 작업원 우측 대퇴부 골절(중상)



본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본별유출시,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5

궤도공사 사고사례

작업원 부주의 안전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21. 2. 22. (월) 02:00분경
- 장 소 : 1호선 동묘앞~신설동 하선 5k345지점
- 내 용 : 테르밋트 용접 시 작업원이 사용한 도가니 철거 이동 중 잔여 용융철이 안전화 안으로 흘러 들어가 작업원 화상 발생

☛ 발생원인

- 시공감독, 작업책임자의 **작업원 안전관리 소홀(용접각반 미 착용)**
- 작업원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도가니 잔여 용융철 미 확인)**

☛ 피해현황 : 작업원 발 부위 2도 화상



용접각반

궤도공사 사고사례

궤도모터카 트로리 추돌

☛ 사고개요

- 일 시 : 2023. 11. 28. (화) 03:00분경
- 장 소 : 2호선 신정지선 도림천~양천구청(내선) 2k200
- 내 용 : 계약상대자(운전원 및 선임탑승자)가 운전한 궤도모터카가 입고대기중인 궤도모터카에 연결된 작업 트로리 추돌하여 탈선

☛ 발생원인

- 계약상대자(궤도모터카 운전원 및 선임탑승자)의 전방주시 소홀 및 안전거리(200m) 미확보

- ### ☛ 피해현황 : 궤도모터카에 연결된 트로리 연결봉 절손, 궤도특수차 수리 등(약 6백만원)



궤도특수차(군자4호) 트로리 추돌



궤도특수차(군자3호) 연결봉 파손



연결봉 훼손

궤도공사 사고사례

궤도모터카 차막이 추돌

☛ 사고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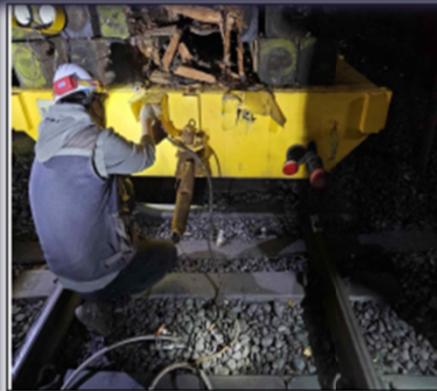
- 일 시 : 2023. 12. 11. (월) 02:21분경
- 장 소 : 3호선 독립문 Y선(무악재~독립문) 15k070
- 내 용 : 궤도공사 중 계약상대자(궤도모터카 운전원)가 운전한 궤도모터카가 작업완료 후 기지로 이동 중 3호선 독립문 유치선에서 운행선 변경을 위한 입환 중 운행선 변경 착오로 유치선 정지위치를 초과하여 차막이 추돌

☛ 발생원인

- 계약상대자(궤도특수차 운전원)의 운행선 착오 및 전방주시 소홀

☛ 피해현황 : 차막이 침목 파손, 트로리 연결봉 절손(약 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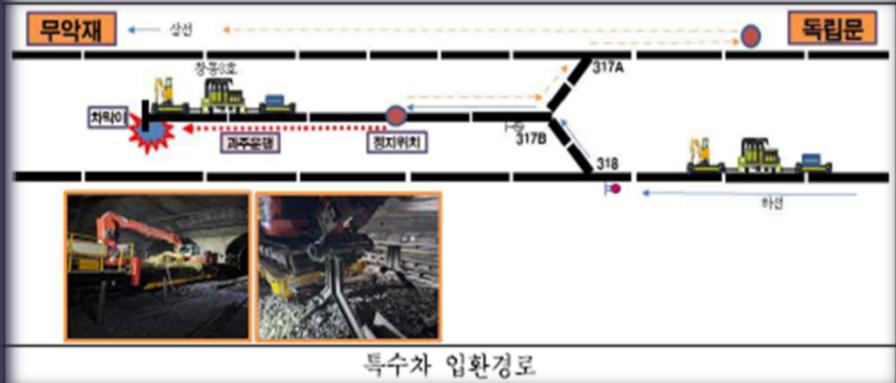
인명피해 1명(약 전치2주)



연결봉 파손



차막이추돌



특수차 입환경로

본 문서의 내용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172-22-32, 105/2024.09.10 14:04/21713235

궤도공사 사고사례

궤도공사 외부작업자 손가락 압좌

☛ 사고개요

- 일 시 : 2023. 6. 18. (일) 03:00분경
- 장 소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대림역간 34k910
- 내 용 : 외부작업자가 고가부 자갈도상 교체공사 시 트랙잭을 이용 레일 내리기 작업중 레일 하부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어 압좌(눌림)으로 병원 응급실 이동

☛ 발생원인

- 트랙잭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자 부주의)

☛ 피해현황 : 왼쪽 엄지손가락 봉합수술 (열차지장 없음)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횡단 케이블 보호 조치 의무화(비용 반영)

- 적용목적 : 선로 내 횡단케이블 위치 개소에서 레일, 장비 상하차 시 **부주의에 의한** 횡단케이블 훼손 예방



케이블보호덮개

특수차(모타카) 접근경보장치 휴대 의무화

- 적용공사 : 터널 내 출입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 적용목적 : 작업자에게 안전조끼형, 손목시계형 등을 착용시켜 특수차(모타카) 접근 시 **접근경보를 수신함으로써 대피시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 특수차(모타카) 접근경보장치 구성



화재 예방 가스경보기 휴대 의무화

- 적용공사 : 가스(통) 이용 레일 용접공종 포함 궤도공사
- 적용목적 : 레일 용접 전 가스 누기 여부 **측정** 후 작업 시행
- 경보기 구매 :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경보장치 구매 :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본 문서의 내용에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의 변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35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궤도공사 반입장비 사전 점검 및 반입 허가제

- 적용대상 : 궤도공사(레일, 침목 교환 등) 공정 반입 장비
- 시행목적 : 착수 전 반입장비 사전 점검 및 승인된 장비 반입허가



※ 노후 장비 반입불가(특히 가설문형들)

현장대리인 궤도 공사장 상주 시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목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 처리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제

가) 위험공종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명기한 사전 작업허가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시공 현장 회의록 및 시공 상세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

나) 위험공종이 반복되는 경우 최초 검토 및 승인 후 작업을 계속 시행

● 위험공종 사전 작업 승인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되었습니다.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35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굴삭기 응급복구 시스템 구축 추진(안)

● 현실태 및 추진배경

- 가. 현행: 굴삭기 사용 시 특수차 평판트로리 상차 후 현장까지 이동 후 평판트로리에서 하차한 후 궤도작업 시행
- 나. 외국: 궤도형 굴삭기를 사용하여 현장까지 레일 면을 주행, 이동 후 궤도 작업을 수행(엔진정지 등 이례상황 발생 시 복구 가능)
- 다. 선로주행 조건 : 인라인 자력 구동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철도차량(특수차) 승인 절차 필요

● 사고 여파

- 가. 1~4호선 일일 약 400만명 이용하는 중추적인 교통시설로 사회적 비난과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불가피(영업손실금 부과 불가피)
- 나. 공사감독 및 관리자 중징계, 시공사 공사중지, 배상책임, 부정당 제제 등

● 문제점

- 가. 응급복구 현실적 불가
- 나. 작업 중 엔진고장, 유압고장 등 자력으로 기동이 불가능한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능력 부재
- 다. 터널이 대부분이 우리공사의 경우 이례상황은 치명적 임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굴삭기 응급복구 시스템 구축 추진(안)

• 개선(안)

⇒ 궤도용 굴삭기 사용(적극 권장) - 자력으로 궤도주행 가능

• 이례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한 굴삭기 도입

가. 엔진구동 없이 레일에 안착할 수 있는 횡이동 방법 구축

나. 레일 안착 후 기지까지 견인주행 할 수 있는 궤도주행장치 구축

다. 굴삭기 엔진~유압계통 등 일일점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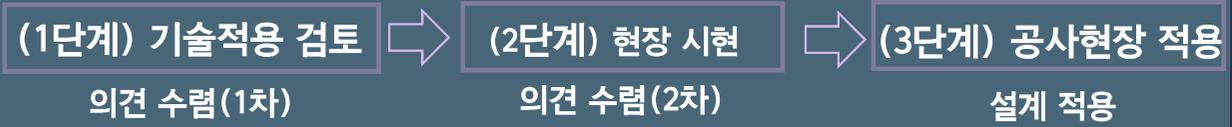
(점검일지 작성 및 확인)

라. 심야시간 고장 대비 긴급출동 네트워크 구축



개선 : 자력 주행 유압모터

현장도착 작업 전경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35

중대재해 예방 추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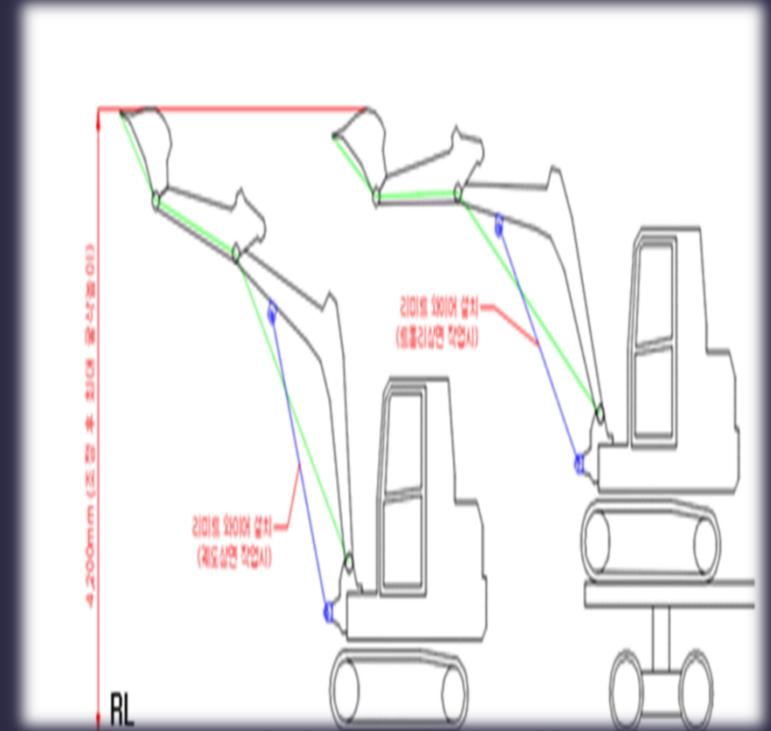
전차선 접촉 위험 예방(굴삭기)

- 개선(안)
 - 높이 제한장치 설치시, 굴삭기 붐대 최대높이는 레일면에서 4.2m로 실제 작업여건을 고려할 경우 낮음

[1-8호선 차량기지 전차선 높이 RL ~ 4.3M]

구분	높이제한장치 설치 전	높이제한장치 설치 후
레일 위 작업시	 <p>< RL~최대높이 5,200mm ></p>	 <p>< RL~최대높이 4,200mm ></p>

- 붐대 높이 제한장치는 레일 위 작업용과 상판 위 작업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트레일러 상차 작업 금지



□ 제안사항 : 전차선 저촉 위험이 없는 소형 굴삭기(크레인) 반입

1/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5

성과 사항

(성과Ⅱ) 서울교통공사 사규(예규) 개정 사항

- 레일용접표준예규(제56조) 레일용접부 검사 항목 중 **굴곡(현장용접 시험편)시험 필요시 시행**
- 단, 용접품질(하자 발생 등) 확인 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
- 레일용접 품질확보(**용접책임자의 시공실적 인증제 도입**)

구 분	인증조건	비고
시공실적 인증제	철도안전전문인력(레일용접) 자격증명서 취득한 자로서 1. 우리공사 관내에서 레일용접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1년 이내 연속하여 참여하는 용접공 2. 해당 공사 착수전 3년 이내 레일용접 시공실적이 가스 압접 250개소이고 테르밋트용접 100개소 이상인 용접공	시공실적 제출 필
* 상기 인증조건 1 또는 2항목 인증 시 적용		

0 레일용접표준예규 제56조(검시종목)

검시종목 \ 용접방법	플래시버트 용접	가스압접 용접	테르밋트 용접	엔크로즈드 아크용접	비고
외관 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현행유지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
초음파탐상검사	전수	전수	전수	전수	↔
경도 시험	5%이상 (1개소5점)	5%이상 (1개소5점)	5%이상 (1개소5점)	5%이상 (1개소5점)	↔
굴곡 시험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일부개정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5

논의 사항[주요 의제]

서울교통공사 사규(예규) 제정 사항

1)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247호) 신설

구분	철도사고 등 인적피해 발생사고	철도사고 등 물적피해 발생사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지연)	품질결함 또는계약자 과실에 의해 공사가 과태료 등 처분 받는 경우
	사망 및 부상	1천만원 이상	20분이상 지연/ 반복사고/ 즉시보고대상	
벌점 부과대상	벌점	벌점	벌점	벌점

벌점처분 기준: 건설분야 시공 및 설계, 감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87조의 3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 공사·물품계약 관련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동 평가항목에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 평가』 감점 항목 신설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24. 07. 02. 예규 제2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진척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등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자가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감리 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 등의 부과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평가기준 [라. 신인동 평가]

상사항목	등급	평가 방법	반영 비율
(가) ~ (파) 좌중			
가.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부실사건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하)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열차운행선 안전사고 제외)	-1.5	1. 열차지연 60분 이상	-1.5 - -0.5
	-1.0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0.5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1.0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시킨 자	
	-1.5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1.0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나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0.5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나 1인 이상 발생	

주)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 평가(감점)
 가. 해당 평가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우타공사의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역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것으로 한다.
 나. 1~3등급은 우타공사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비)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다.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지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상-에)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라. 5~7등급은 공사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자(아연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비)에 한한다.
 ※ (하)항목이 (가)~(파)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경우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열도안전법 제2조)

서울교통공사 사규(예규) 제정 사항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5

논의 사항[주요 의제]

건설기술인 범위 전문분야 중 '궤도' 신설 추진에 따른 공동노력

○ 문제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분야는 토목과 궤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철도 노반등 토목분야 자격 및 경력만 있는 건설기술인도 궤도공사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업무 수행이 가능

※ 철도분야 토목,궤도 건설기술인 등록 전문분야는 철도·삭도만 존재

나) 전문성이 결여된 타 기술분야 건설기술인의 궤도업무 수행 시 해당 기술분야 전문성 결여로 중대재해 발생 및 공사품질 저하 우려

※ 공사·시공 및 용역(설계,진단,감리) 시행을 토목/궤도 분야별 개별 발주 시행 중

○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건설기술인의 범위 전문분야 중 “궤도” 신설]

- 궤도기술자 전문성 확보 및 자긍심 고취

- 철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한 시민 안전 확보

현행	개선안	법규명
·궤도 업무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범위(전문분야)가 “철도·삭도”로 지정되어 전문성 결여	·궤도업무를 위한 건설기술인의 범위(전문분야) 중 궤도를 추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 관련 조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현행		개선안	
건설기술인의 범위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의 범위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 12) 지적 공간정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 12) 지적 공간정보 13) 궤도

본 문서의 무단복제, 배포, 전파, 무단 전재, 변경 또는 기타 불합당한 사용 시,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172.22.32.105/2024.09.10 14:04/21713235

논의 사항[공사 제안사항]

연번	제 목	건의 사항	비 고
1	공사장 안전정보 자동 전송 시스템(어플) 구축	해당공사의 위험 공종에 대한 안전정보(안전수칙, 작업메뉴얼 등) 자동 전송 시스템(어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도분야 안전메뉴얼 ○ 궤도분야 유형별(현장조치) 매뉴얼 -레일절손사고 매뉴얼, -궤도변형사고 매뉴얼 -분기기 훼손사고 매뉴얼 -신호장애 매뉴얼 -철도장비 탈선사고 및 추돌사고 매뉴얼 -철도장비 고장사고 매뉴얼 -선로침수사고 매뉴얼
2	교량 궤도시설 개량 작업자 안전고리 체결	고소작업자 낙하방지 안전고리 설치로 추락등 중대재해 사고 예방 필요	
3	건설분야 하도급 감사 지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 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 현장별 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노무비를 그외 대가와 구분 관리 및 개인계좌 입금(구분관리) 시행 	

궤도공사 협력사 건의(애로)사항

연번	제 목	문 제 점	건의 사항	비 고
1	습식 레일절단기 현장 적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식 레일절단기(뜸날)로 현장 적용 시 습식 절단기 설치 불가개소에 따른 시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식절단기 설치 불가 개소에 레일 절단기(불꽃) 사용 허용 (단, 불티방지막, 방염포, 소화기, 방화수, 화재감시자 배치) 	

반부패 · 청렴 실천 다짐

우리는 『부패 없고 투명한 궤도공사 문화 정착』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하는 궤도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이권 개입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갑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궤도분야 발전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궤도공사 수행을 바탕으로 『부패 없고 투명한 궤도공사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2024. 9. 6.

서울교통공사(궤도분야) ·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일동

반부패 · 청렴 실천 다짐

우리는 '부패 없고 투명한 궤도공사 문화 정착'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하는 궤도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이권 개입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갑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궤도분야 발전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궤도공사 수행을 바탕으로 '부패 없고 투명한 궤도공사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2024년 9월 6일

서울교통공사(궤도분야) ·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일동

서울교통공사 궤도분야 Hot-Line 운영 안내

서울교통공사(궤도분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및 갑질 근절 대책을 위한 Hot-Line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	참여 내용	신고 방법
궤도분야 전직원	인사, 청렴 등	<input type="checkbox"/> 오픈 카톡방 운영 - 반드시 익명으로 참여
궤도분야 계약업체	부패, 갑질 등 부정사례 신고 등	

방법1: QR코드 참여

1. QR코드를 스캔한다.

2. 1:1 오픈채팅 선택

서울교통공사 궤도분야
Hot-Line (오픈 카톡방)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채널	신고대상	신고방법
공직자 비리신고	임직원 권한남용, 법령 및 규정위반 행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경로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조리신고센터 ○ 바로가기 URL : http://www.seoulmetro.co.kr □ 상담 및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 02-6311-9968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임직원의 부정청탁	
갑의 부당행위 신고	임직원의 시민, 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권한남용	
예산낭비신고	공사 추진사업 중 예산낭비 사례 신고	
상가 불법전대 양도신고	공사의 승인 없이 전대 또는 양도 상가 신고	
계약관련 부조리 신고	계약업무 처리과정 중의 불편·부당한 사례 및 금품·향응 요구 사례 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불법하도급행위 및 임금·자재·장비대금체불신고	



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경청에 감사드리며, **서울교통공사(궤도분야)**는
안전하고 청렴한 궤도공사 문화정착을 위해
협력사와 항상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